

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4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
- 1)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·자문에서 배제
 - 2)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
 - 3) 위원이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진 회피
- 나. 조문상 용어·표기 오류 정비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5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1. 21.~2026. 2. 10.(20일간)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국제협력국 투자진흥과

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등 기타” 를 “등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국·내외” 를 “국내외” 로,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국내·외 투자기업 지원” 을 “국내외 투자기업 지원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내·외 기업” 을 “국내외 기업” 으로, “국내·외 투자기업” 을 “국내외 투자기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이상으로써” 를 “이상으로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국내·외” 를 “국내외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상·하수도” 를 “상하수도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3조제2항” 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3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국내·외” 를 “국내외” 로 한다.

제2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·내외”를 “국내외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투자유치·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”를 “투자유치·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”로 한다.

제27조제3항제6호 중 “국·내외”를 “국내외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업체의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
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
3.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34조 중 “국내·외”를 “국내외”로 한다.

제35조 중 “국내·외” 를 “국내외” 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 중 “허위” 를 “거짓” 으로 한다.

제39조 중 “조례” 를 “조례의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투자유치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투자유치과장 유 지 연
	팀장 직위·성명	K스타월드팀장 박 승 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태 경 (031-5182-144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기업”이란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본사·지사·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국·내외</u> 유망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,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장 <u>국내·외 투자기업 지원</u></p> <p>제4조(지원대상 기업의 선정) ① 시장은 <u>국내·외 기업</u>의 투자(증설을 포함한다)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6조 위원회의 심의를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국내외</u>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장 <u>국내외 투자기업 지원</u></p> <p>제4조(지원대상 기업의 선정) ① - --- <u>국내외 기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내외 투자기업</u></p>

거쳐 국내·외 투자기업(이하 “투자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관내 투자비가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

가.·나. (생략)

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·외 기업

② (생략)

제5조(기업환경 개선) ①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, 상·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기업활동 지원)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「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「하남시 기업 에스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이상으로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국내외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기업환경 개선) ① -----
----- 상하수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업활동 지원) -----

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판로 지원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 증대를 위하여 국내·외 시장개척,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2조(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) ①

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국·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자격 가점 부여
3. ~ 5. (생략)

제26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

----- 「외국인투자
촉진법」 제3조제2항-----
-----.

제17조(판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국내외 -----
-----.

제22조(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) 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국내외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

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
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
업 투자유치·지원위원회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
다.

② (생략)

제27조(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
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
만,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
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
니하도록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그 밖에 국·내외 투자유치
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하
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
진 사람

제30조(위원의 해촉) ① (생략)

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의거
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
를 고지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 투자유
치·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
회”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
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국내외 -----

제30조(위원의 해촉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따라 ----

-----.

제3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
피)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업체의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
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입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
3.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34조(투자유치 포상금) 시장은 국내·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,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기업유치센터 설치) 시장은 국내·외 투자 및 기업유치를 효율적 추진하고 도모하기 위해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기업유치센터는 센터장과 직원(출자·출연 기관 및 공기업 포함)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37조(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)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 2.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 3. ~ 7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3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

제34조(투자유치 포상금) -----
국내외 -----

-----.

제35조(기업유치센터 설치) -----
- 국내외 -----

-----.

제37조(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 2. 거짓 -----

 3. ~ 7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시행규칙) -- 조례의 -----
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